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무순위 청약의 대상이 되는 주택을 무주택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무순위 청약 신청의 자격요건을 민영주택·공공주택과 무관하게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한정하고, 지역별 특성 및 시장상황에 따라 투기 및 과열경쟁이 우려되는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자율적으로 거주요건을 부과하는 것을 허용하는 한편,

가점제 및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시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양가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징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(공공주택의 경우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를 말한다)”를 “제26조제5항 단서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는 성년자”로 한다.

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제2호의2”를 “제2호의2 및 제10호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
과거 3년간(나목의 경우에는 1년간에 한한다)의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에 따른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. 제2조제8호에 따른 가점제의 방법으로 당첨된 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(해당 직계존속으로 부양가족수 가점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)

나. 제2조제8호에 따른 가점제의 방법으로 당첨된 자의 직계비속으로서 30세 이상인 자(해당 직계비속으로 부양가족수 가점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)

다. 제46조에 따른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(해당 직계존속으로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요건을

충족한 경우에 한정한다)

제26조제5항 단서 중 “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(공공주택의 경우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를 말한다)”를 “국내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(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투기 및 과열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위치한 광역자치단체 또는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한정하여 공급하도록 거주요건을 부과할 수 있다)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⑩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5항 단서에 따라 거주요건을 부과하는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(입주자모집 방법) ① ~ ④ (생략)	제19조(입주자모집 방법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⑤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의뢰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(공공주택의 경우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를 말한다)를 대상으로 인터넷 접수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해야 한다. 이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.	⑤ ----- ----- ----- <u>제26조제5항 단서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는 성년자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2. (생략)	1. 2. (현행과 같음)
⑥ (생략)	⑥ (현행과 같음)
제23조(주택공급신청서 교부 및 신청서류) ① (생략)	제23조(주택공급신청서 교부 및 신청서류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주택의 공급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해야 한다. 다만, 제2호, 제3호,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는 주택의 공급신청 시에 제출하지 않고 공급계약을 체결하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,
제2호의2에 따른 서류는 당첨된
날부터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
까지 제출해야 한다.

1. ~ 9. (생략)

<신설>

제2호의2 및 제10호-----

-----.

1. ~ 9. (현행과 같음)

10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
해당하는 자의 입주자모집공
고일 기준 과거 3년간(나목
의 경우에는 1년간에 한한
다)의 「국민건강보험법」
제41조에 따른 건강보험 요
양급여내역을 확인할 수 있
는 서류

가. 제2조제8호에 따른 가점
제의 방법으로 당첨된 자
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
(해당 직계존속으로 부양
가족수 가점을 취득한 경
우로 한정한다)

나. 제2조제8호에 따른 가점
제의 방법으로 당첨된 자
의 직계비속으로서 30세
이상인 자(해당 직계비속
으로 부양가족수 가점을
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)

다. 제46조에 따른 특별공급

에 당첨된 자 또는 배우자
의 직계존속(해당 직계존
속으로 제46조제1항 각 호
외의 부분에 따른 요건을
충족한 경우에 한정한다)

③ · ④ (생략)

제26조(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) ① ~ ④ (생략)

⑤ 사업주체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거나 제26조의2제5항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이 있는 경우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소멸기간이 지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,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·호수를 공개한 후 동·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해 추첨의 방법으로 동·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해야 한

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
제26조(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

다. 다만,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(공공주택의 경우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를 말한다)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.

⑥ ~ ⑨ (생략)

<신설>

-. -----
 --- 국내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(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투기 및 과열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위치한 광역자치단체 또는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한정하여 공급하도록 거주요건을 부과할 수 있다)---.

⑥ ~ ⑨ (현행과 같음)

⑩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5항 단서에 따라 거주요건을 부과하는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